

대신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

[2017학년도 제2차 회의록]

정수	재적	출석
11	11	7

1. 일시 : 2018년 1월 30일(화) 11시 (회의소집통보일 : 2018년 1월 18일)
2. 장소 : 대신대학교 본관 1층 회의실
3. 출결사항
출석의원 : 7명(최부영, 조효제, 홍종수, 황봉환, 류진교, 황보수, 배동석)
결석의원 : 4명(김도연, 오은주, 권정후, 윤필립)
4. 안건
 - (1) 대신대학교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 자문의 건
 - (2) 대신대학교 2018학년도 학교비회계예산 자문의 건
 - (3) 대신대학교 학칙 개정 심의의 건
5. 회의내용
 - (1) 의장이 조효제 의원 기도케 한 후 회원을 점명하니 7명이 출석하여 성수가 되므로 개회를 선언하다.
 - (2)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 자문에 관하여 유인물로 보고한 후 의원들이 검토하여 총 세입금 6,500,000,000원(등록금회계 3,426,000,000원, 비등록금회계 3,184,000,000원), 총 세출금 6,500,000,000원으로 확인한 후 첨부한 유인물대로 받기로 황봉환 의원의 동의와 홍종수 의원의 재청으로 가결하다.
 - (3) 2018학년도 학교비회계예산 자문에 관하여 유인물로 보고한 후 의원들이 검토하여 총 세입금 6,200,000,000원(등록금회계 3,440,000,000원, 비등록금회계 2,760,000,000원), 총 세출금 6,200,000,000원을 확인한 후 첨부한 유인물대로 받기로 홍종수 의원의 동의와 조효제 의원의 재청으로 가결하다.
 - (4) 학칙 개정 심의에 관하여 유인물로 보고한 후 의원들이 검토하여 학칙 제19조(전과), 제21조(이수과목)와 학칙시행내규 제11조(전과기준), 제14조(전과의 제한), 제15조(이수과목 및 학점), 제31조(유급제도), 제43조(학적부정정)를 확인하여 첨부한 유인물대로 받기로 홍종수 의원의 동의와 조효제 의원의 재청으로 가결하다.

6. 첨부 : 1. 2017학년 학교비 자금 계산서 1부

2. 2018학년도 학교비회계예산 1부

3. 학칙 개정 사유서 및 학칙시행내규 개정 사유서 1부

7. 폐회선언

위와 같이 논의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종수 의원의 동의와 조효제 의원의 재청으로 폐회하기로 가결한 후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.

2018년 1월 30일

대신대학교 평의원회

의 장	최 부 영	
의 원	조 효 제	
의 원	홍 종 수	
의 원	김 도 연	불 참
의 원	황 봉 환	
의 원	오 은 주	불 참
의 원	류 진 교	
의 원	권 정 후	불 참
의 원	황 보 수	
의 원	배 동 석	
의 원	윤 필 립	불 참